

#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2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3. 8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비보상 등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여비의 부정 수령액 가산 징수 2배에서 5배로 강화
  -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(안 제3조의 3)
- 조문 정비 (안 제4조)

## 개정조례안 : 붙임1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4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1. 20. ~ 2. 9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##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 중 제1항 및 제3항의 “2배” 를 “5배” 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” 를 “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 실·과	회 계 과
입 안 자	실·과 장 직위·성명	회계과장 김 영 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재무팀장 최 지 영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영 실 (행정 3071)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3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</p> <p>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<u>2배</u>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<u>2배</u> 상당액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<u>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2.~8. (생략)</p>	<p>제3조의3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</p> <p>----- ----- -----<u>5배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5배</u> ----- -----.</p> 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2.~8. (현행과 같음)</p>